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 . . (제 회)	

하천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 (환경부장관)
제출연월일	20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하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하천관리청이 하천관리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하계기간 등 일정기간 동안 불법 점용에 대한 집중점검을 실시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는 등의 「하천법」이 개정(법률 제20333호, 2024. 2. 20. 공포, 2024. 8. 21.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구체적인 내용을 정하고, 하천구역내 손실보상 관련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위탁기관을 추가하는 등 그간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 가. 하계기간 불법점용 등에 대한 점검 및 통지에 관한 사항 신설·정비(안 제82조제1항·제2항·제4항)
- 나. 국가하천을 관리하는 하천관리청이 해당 시·도지사에게 현장확인, 관련 서류를 요구할 수 있는 규정 신설(안 제82조제3항)
- 다. 하천기본계획에 포함되는 사항 일부가 하천법에 규정됨에 따라 관련 규정 일부 정비(안 제24조제2항)
- 라. 하천구역 손실보상 업무 등 위탁기관 추가(안 제90조제1항)
- 마. 기타 타법 개정에 따른 관련 조문 현행화(안 제91조제2항)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4. 5. 2. ~ 6. 12.)

하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하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2항제1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2호를 제1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항 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제3호 및 제4호로 하고, 같은 항 제8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8호의2 및 제9호를 각각 제5호 및 제6호로 한다.

2. 홍수방어계획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제방·댐·저류지·홍수조절지·방수로 등 홍수방어시설의 홍수방어계획

나. 토지이용계획 등에 따른 홍수방어계획

다. 홍수방어계획의 연차별 시행 방안

제82조의 제목 “(하천관리상황의 점검)”을 “(하천관리상황 등의 점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매년 5월 말”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중전의 제2항) 중 “제1항”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② 법 제74조제2항에 따라 하천관리청은 불법점용에 대한 집중점검을

실시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국가하천을 관리하는 하천관리청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점검을 실시할 때에 해당 시·도지사에게 현장 확인, 관련 서류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하천관리청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제90조의 제목 “(손실보상업무의 위임 또는 위탁)”을 “(손실보상업무 등의 위임 또는 위탁)”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제2호 및 제3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한국환경보전원

제91조제2항제2호가목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5조제1항”을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1항”으로 한다.

부 칙

이 영은 2024년 8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4조(하천기본계획의 수립) ① (생략)	제24조(하천기본계획의 수립) ① (현행과 같음)
② 하천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 -----.
1. 하천기본계획의 목표	<삭제>
<신설>	2. 홍수방어계획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제방·댐·저류지·홍수조절지·방수로 등 홍수방어시설의 홍수방어계획
	나. 토지이용계획 등에 따른 홍수방어계획
	다. 홍수방어계획의 연차별 시행 방안
2. (생략)	1. (현행 제2호와 같음)
3. 제방·댐·저류지·홍수조절지·방수로 등 홍수방어시설의 홍수방어계획	<삭제>
4. 토지이용계획 등에 따른 홍수방어계획	<삭제>
5. 홍수방어계획의 연차별 시행 방안	<삭제>
6.·7. (생략)	3.·4. (현행 제6호 및 제7호와 같음)

8. 자연친화적 하천 조성에 관한 사항

8의2.·9. (생략)

③ (생략)

제82조(하천관리상황의 점검) ①
법 제74조제1항에 따라 하천관리청은 매년 5월 말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 5. (생략)

<신설>

<신설>

② 하천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점검사항 및 조치결과를 환경부

<삭제>

5.·6. (현행 제8호의2 및 제9호와 같음)

③ (현행과 같음)

제82조(하천관리상황 등의 점검)

① -----
----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

1. ~ 5. (현행과 같음)

② 법 제74조제2항에 따라 하천관리청은 불법점용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실시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국가하천을 관리하는 하천관리청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점검을 실시할 때에 해당 시·도지사에게 현장 확인, 관련 서류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하천관리청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④ ----- 제1항 및 제2항-----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
부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90조(손실보상업무의 위임 또는
위탁) ① 법 제8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투
자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을 말한다.

1. (생략)

<신설>

3. 4. (생략)

② (생략)

제91조(폐천부지등의 교환) ①
(생략)

② 환경부장관은 법 제84조제1
항에 따른 폐천부지등을 다음
각 호의 가격을 기준으로 교환
하여야 한다.

1. (생략)

2. 새로 하천구역으로 된 토지
및 하천구역에 이미 편입된
토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가격

가. 편입 당시의 토지가격에
교환 시까지의 「국토의

-----.

제90조(손실보상업무 등의 위임
또는 위탁) ① -----

-----.

1. (현행과 같음)

4.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한국환경보전원

2. 3. (현행 제3호 및 제4호와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91조(폐천부지등의 교환) ①
(현행과 같음)

② -----

-----.

1. (현행과 같음)

2. -----

가. -----
----- 「부동산

<u>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5조제1항</u> 에 따른 지가변동률에 따 른 지가변동치(이하 “지가 변동치”라 한다)를 가산한 금액 나. (생략)	<u>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1항</u>----- ----- ----- ----- ----- 나. (현행과 같음)
--	---

< 의안 소관 부서명 >

환경부 하천계획과	
연 락 처	(044) 201 - 7710